

 <b>인천광역시</b>	<b>보도자료</b>		
	배포일자	2022년 11월 22일(화) 총 4매	
담당 부서 토지정보과	담당자	• 부동산평가팀장 김희원 ☎440-4596 • 담당자 최다빈 ☎440-4599	
사진(이미지)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참고자료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보도시점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시 ‘조상 땅 찾기’ 서비스 …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신청하세요**  
 - 2008년 이후 사망자의 경우 온라인 서비스 신청 가능 -  
 - 신청 한번으로도 고인의 전국의 토지 소유현황 알 수 있어 -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가 추진 중인 조상 땅 찾기 서비스가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방문 신청만 가능했던 서비스가 21일부터는 온라인으로 확대된다고 밝혔다.

조상 땅 찾기는 토지소유자의 갑작스러운 사망이나 관리 소홀 등으로 조상 소유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 사망한 조상 명의의 전국 토지 소유 현황을 알려주는 행정서비스로 수수료는 무료다.

인천시는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6,955명에게 2만524필지 약 1천5백만㎡의 토지 소유현황을 제공했다.

인천시는 그동안 코로나19확산으로 비대면 행정서비스 요구가 많아 지는데다, 행정기관 직접 방문에 따른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기존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개선해 온라인 서비스를 병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온라인 조상 땅 찾기는 2008.1.1. 이후 사망한 부모, 배우자, 자녀의 토지를 찾아주는 서비스로, 사망인(조회대상자) 기준 기본증명서에 사망일자가 표기돼 있어야 하고, 가족관계증명서로 사망인과 신청인 간 가족관계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한 번의 신청만으로도 고인이 가진 전국의 토지 소유현황을 알 수 있다.

주민등록번호를 모르고 사망자의 이름만 알고 있거나, 2008년 이전 사망자의 토지를 찾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전과 같이 시청 또는 군·구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인터넷 신청 방법은 K-Geo 플랫폼(kgeop.go.kr)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할 때에는 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밖에 궁금한 사항은 인천시 토지정보과(032-440-4599) 및 10개 군·구 토지정보과 또는 민원지적과 조상땅 찾기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신청자격 및 절차 등을 자세히 설명해 준다.

지대환 인천시 토지정보과장은 “온라인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통해 조상의 토지소유권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란다”며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개인의 재산권 보호에 도움을 드리겠다”고 말했다.

<붙임> 관련 사진

## 조상땅찾기란?



불의의 사고 등으로 인하여 갑작스런 사망으로 후손들에게 조상이 소유한 토지의 소재를 알려주는 제도

### 조상땅찾기 신청 전 필수 확인사항

- ☑ 조상님 (피상속자) **성명(주민번호)** 확인!
- ☑ **상속자의 자격**이 갖춰져 있는지 확인!

**참고**

**조상 땅 찾기 제공 실적**

(2022. 1. 1. ~ 10. 31.)

구분	신청건수	조회인원수	자료제공 인원수	자료제공 필지수	면적(㎡)
계	20,912	25,827	6,955	20,524	15,017,274.4
시	91	101	33	255	648,859.8
강화군	524	547	237	1,087	1,183,232.6
옹진군	129	131	63	357	363,165.6
중 구	914	1,109	292	827	488,263.6
동 구	544	643	198	437	122,728
미추홀구	3,239	4,184	1,104	2,872	1,922,719.8
연수구	2,261	2,620	729	2,244	2,282,051.2
남동구	3,623	4,735	1,198	3,394	2,391,223.2
부평구	3,514	4,693	1,245	3,487	2,419,062.2
계양구	2,180	2,696	726	2,212	1,411,392.2
서 구	3,893	4,368	1,130	3,352	1,784,576.2